

2024. 6. 11. (화). 10:00
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< 안건명 >

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도시교통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조성대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4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 시,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함. 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입법예고 결과(24.5.31. ~ 24.6.6.)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 시,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,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